

# 대신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대신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소속)** 외국인교원은 학부(과)에 소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조(자격)** ①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권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국내외(전문)대학,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.

②학과과목 등의 특수분야 또는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용계약)** ①외국인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, 재계약 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.

②임용계약에는 소속, 직위, 담당과목, 책임시수, 임무, 복무, 대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평가)** ①외국인교원을 재계약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의 학생수업평가, 학과 평가, 담당자 및 관리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

②근무평정 및 업적평가는 <별지 제1호 서식>, <별지 제2호 서식>, <별지 제3호 서식>에 의거하여 평가한다.

③외국인교원은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임무)** ①외국인교원의 책임시수는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수를 따르며 특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교원에게 방학중 휴가를 보장하며,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③지정된 강의에 대한 계획, 준비 및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보수)** ①보수는 근무연수와 학력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
②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초과강사료 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외국인교원에게 일정액의 주택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④계약기간 만료 전에 총장의 승인 없이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, 퇴직할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강의료)** ①외국인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한 때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 단, 외부지원 등의 특별히 개설된 강좌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외부지원 예산규모와 상황에 따라 합의,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.

②외국인교원이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.

**제9조(복무)** ①외국인교원은 본교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주4일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상황으로 총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외국인교원은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법령과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.

③외국인교원은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 학교 또는 타 기관에 출강을 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.

④외국인교원은 본 대학교의 평가자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와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.

⑤외국인교원이 임용기간 중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외국인교원이 방학기간 중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출국 15일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처우)** ①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, 숙소 제공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제공한 숙소의 사용과 관련된 관리비,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 등은 본 대학교에서 부담한다.

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외국인교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방학 중 학기당 8주이내의 기간동안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별도의 휴가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외국인교원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보험료는 학교와 본인이 각각 부담한다.

⑤외국인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,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
⑥외국인교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왕복 항공료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⑦외국인교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세금)** 본 대학교가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.

**제12조(의원면직)** 외국인교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8주전까지 사직원과 함께 퇴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신고의무)**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

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교원을 해임하거나 외국인교원이 퇴직한 때
2. 임용된 외국인교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
3. 임용계약의 중요한 내용(계약기간, 근무처)을 변경한 때
4. 임용한 외국인교원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

**제14조(출입국 관리 업무 등)** 외국인교원의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업무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는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**제15조(보고)** 외국인교원을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## \_\_\_\_\_학년도 외국인교원 강의 평가 집계표

연 번	성명 (Name)	소속 (학부/학과)	최초임용년도	강좌수업 평가 평균	평가 점수	평균평가 기준	비 고
1						강의평가 95 이상 : 30점 90 이상 : 27점 85 이상 : 24점 80 이상 : 21점 75 이상 : 18점 70 이상 : 15점 70 미만 : 10점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11							
12							
13							
14							
15							
16							
17							
18							
19							
20							
21							
22							
23							
24							
25							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소속부서장 : \_\_\_\_\_ (인)



<별지 제3호 서식>

## 학년도 외국인교원 담당부서 평가표

연 번	성명 (Name)	소속 (학부/학과)	최초임용년도	항목별 평가				비 고
				협조성 (20점)	성실성 (10점)	서류 처리 (10점)	합계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2								
13								
14								
15								
16								
17								
18								
19								
20								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소속부서장 :

(인)